

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고,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

- (법무부)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 특례 부여
 - (유형1. 지역 우수인재) 지자체장이 추천*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·창업을 조건으로 거주(F-2) 체류자격 先 변경
 - *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인원, 필요직군, 기타 우수인재 요건 등을 추천
 - (유형2. 외국국적동포)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가족 단위로 동반 이주한 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으로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先변경, 취업 활동 제한 완화 및 영주(F-5-6)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
- (지자체) 지역별 인구감소율·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력규모 파악 및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